

# 입안계획서

## 1. 제명

-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(관세청 훈령 제1911호, '18.4.24.)

## 2. 개정사유

- 통고처분과 관련한 훈령과 예규\*를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·정비, 타법·행정규칙 개정사항\*\*을 반영
  - \*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,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
  - \*\* 관세사법('22.4.7.) 및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('22.5.10.) 개정

## 3. 주요 개정내용

- 훈령의 목적을 통고금액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에서 통고처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규 통합
- 세관공무원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\*에 따라 고발 대상 사건에 대한 통고처분 사전승인 요청 대상에 관세범칙조사위원회에서 사전 신청을 의결한 경우를 추가
  - \* 관세범칙조사위원회 심의 대상 신설(제72조의2)
- 관세사법 개정\*에 따라 고발 대상에 관세사시험 방해자에 대한 처벌 법조문 추가(별표)
  - \* 관세사시험 방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(제29조제2항)

## 4.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: "붙임"

## 5. 시행 일자 : 2023. 0. 00. (공포즉시 시행)

## 6. 의견제출 방법

- 제출처 : 관세청 조사총괄과
- 담당자 : 관세행정관 노진상(042-481-7952)
- 제출기한 : 2023. 6. 15.
- 제출방법 : 메모보고, 전자문서